

14-카.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: **대학** 대학원 **전문대학** **대학위대학**

【공시시기】: 2024년 8월

【공시방법】: 직접입력

【공시내용】: 2024년 장애학생지원체제 및 운영 현황 공개

【공시양식】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(장애학생지원체제 현황) 2024. 4. 1., (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) 2023. 3. 1. ~ 2024. 2. 28.)

(단위: 명, 분)

기준 연도	구분	전체 재학생 수	장애 재학생 수												
			시각		청각		지체·뇌병변		지적·지폐		기타		계		
			중증*	경증**	중증	경증	중증	경증	중증	경증	중증	경증	중증	경증	
	대학														
	대학원														
	계														

장애인 특별전형 유무 (O/X)	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	특별지원 위원회 유무 (O/X)	장애학생 지원센터 유무 (O/X)	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			장애학생지원센터 외 지원인력			학칙 및 규정	장애이해 프로그램 운영시간 (분)	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수		수혜 장애 학생수	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여부 (O/X)	장애학생 지원 계획 [한글/워드]
				선정	전담	겸직	지원 부형	전담	겸직			일반 교육 지원 인력	전문 교육 지원 인력			

* 중증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
** 경증: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

■ 검증사항

【전체 재학생수】: '전체 재학생수'는 <4-라>, <4-마>의 재학생 총계와 일치해야 함

■ 작성지침

【전체 재학생수】: 2024. 4. 1. 기준 정원내·외 재학생수(장애학생 포함, 휴학생 제외)

- ※ 대학원은 전체 대학원(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) 재학생수를 합산하여 입력
- ※ 통폐합대학의 경우, 통합대상 대학 재학생 수도 포함

【장애 재학생수】: 2024. 4. 1.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정원내·외 장애 재학생수(휴학생 제외)를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장애 종류에 따라 '장애 정도가 심한/심하지 않은 장애학생'으로 구분하여 입력(중복장애의 경우 주 장애 기준으로 작성)

- ※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[별표 1] '장애정도' 구분 참고

【장애인 특별전형 유무】: 2024학년도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시행 유무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4호 관련, 신·편입학 모두 포함)

【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】: 2024학년도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입학등록자 수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

2항4호 관련, 신입학 및 편입학 포함)

- 【특별지원위원회 유무】: 2024. 4. 1. 기준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유무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9조)
- 【장애학생지원센터 유무】: 2024. 4. 1. 기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유무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0조)
- 【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】: 2024. 4. 1. 기준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현황
- 【장애학생지원센터 외 지원인력】: 2024. 4. 1. 기준 장애학생 수가 9명 이하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직원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대학 중 센터 외 추가 지원 직원 현황
- 【학칙 및 규정】: 2024. 4. 1. 기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해당 조항을 명기하고, 학칙 및 규정에 미규정 시 '해당 없음'으로 표기함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2조)
- 【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】: 2023. 3. 1. ~ 2024. 2. 28. 기간 중 대학의 장이 이행한 교직원·보조인력·학생 등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시간 합계를 분 단위로 입력함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0조제2항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과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)
- 【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수】: 2024. 4. 1. 기준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,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자체 보조인력 인원 전체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1조)
 - ※ 일반 교육지원인력(대학생, 일반인 등), 전문 교육지원인력(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, 수화통역사, 점역사 등)
- 【수혜장애학생수】: 2024. 4. 1. 기준 교육지원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수
- 【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여부】: 2024년 1학기 기준 장애 재학생 대상 개인별 교육지원계획(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0조의2) 수립 여부
- 【장애학생 지원 계획】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 제31조의2에 따른 2024년 장애학생 지원 계획
 - ※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0조의2(개인별 교육지원계획)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(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)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함
 - ※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시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, 편의시설 구축 현황, 보조공학기기 구비 현황, 대학생활 지원 계획 등 포함
 - ※ 장애학생 지원 계획은 문자를 소리 및 점자 등으로의 변환을 위해 편집 가능한 한글 또는 워드 파일로 공시해야함(PDF파일은 이미지로 인식하여 변환 불가)

■ 참고사항

-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
- 재학생 수는 2024년 <4-마> 재학생 현황 활용